



세척제 **트리클로로메탄** 급성중독 발생경보

'23.3월 경기도 이천시 소재 **전자부품 제조업체**에서 근로자 7명이 세척제에 함유된 **트리클로로메탄(클로로포름)**에 노출되어 **독성간염 발생**

[재해 개요 및 원인]

[작업내용] 전자 부품을 제조하는 작업장에서 제품 가공 후 **제품에 묻어있는 절삭유**(가공 과정에서 마찰열을 냉각시키는 윤활유)를 **제거**하기 위해 소분 용기에 담긴 **세척제**를 **헝겊에 적셔 표면을 직접 닦는** 작업 수행



[사용물질] 황달, **간독성**, 신장 손상 등의 유해성이 있는 **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 사용**

⇒ '22년 6월부터 기존 세척제(디브로모메탄)보다 세척력이 좋은 **신규 세척제(트리클로로메탄)**로 **변경**했으나, 신규 세척제 **유해성 미인지** 및 소분용기 기존 경고표지 그대로 부착

[재해원인] ① **유해성 미인지**(유해성교육 미실시, 소분용기에 변경된 세척제 경고표지 미부착 등) ② **국소배기장치 미설치** ③ **적정보호구 미착용**(KF마스크 등 부적정 마스크 착용)

⇒ 재해자들은 **세척작업**에서 근무하면서 **세척제 증기에 반복 노출**되어 황달, 간수치 상승 등 **급성중독 증상 발생**

[예방 대책]

■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는 반드시 국소배기장치 설치

- 유해증기나 가스 등이 작업자 호흡기로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

■ 유해물질 노출 근로자의 적정보호구 착용

- 방독마스크, 불침투성 보호장갑 및 보호의 등

■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주지

- 사용물질에 대한 인체영향 등을 교육을 통해 작업자에게 주지
- 변경된 화학물질은 반드시 사전 교육 실시

최근 **변경된 세척제 사용에 따른 중독사고가 '22년(29명)에 이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.**

취급하는 세척제의 유해성 확인이 예방의 시작입니다!

※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비용지원 합니다

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**국소배기장치** 또는 **밀폐설비**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**50~70%**를 지원합니다 (대표전화 : ☎1644-8845)

세척제 등 **화학물질을 사용**하거나 **최근 사용하던 세척제가 변경**되었고, 검진 결과 **간수치 상승, 황달, 간손상** 등의 증상으로 **직업병이 의심**된다면 **직업병 안심센터**(대표전화 : ☎1588-6798)로 문의하세요